

용인 양지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7
- 공급규모 및 내역 : 총 175세대(일반분양 103세대) [지하5층 ~ 지상29층 아파트 1개동 및 근린생활상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전용 85㎡ 이하 주택건설량 10% 이내, 15세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7 일원 용인 양지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 주상복합 아파트 신규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배정하오니, 각 기관 별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2021년 02월 19일(금) 오전 중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건본주택개관	2021.02.16.(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2021.02.15.(월)
특별공급 신청일	2021.02.25.(목)	
당첨자 발표일	2021.02.28.(일)	
서류제출일	2021.03.01.(월)~ 2021.03.04.(목)	10:00 ~ 16:00
계약체결일	2021.03.11.(화) ~ 2021.03.13.(목)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 및 발표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추천기관

대상자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경기동부보훈지청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기동부보훈지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방복제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입주자저축 요건 :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하며, 제36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청약예금 :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분 (전용면적 기준)	거주지역		
	용인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85㎡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102㎡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135㎡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또는 그 세대원(배우자를 포함하며,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 또는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후 동시에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여부 판단 대상자의 주택소유 여부에 의거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본다.(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기관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구분	59A	59B	59C	59D	계
국가유공자	2	1	-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	-	3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2	-	1	-	3
장애인(해당 지자체별 1세대씩 배정)	2	-	-	1	3
중소기업 근로자	1	-	1	1	3
합 계	9	2	2	2	15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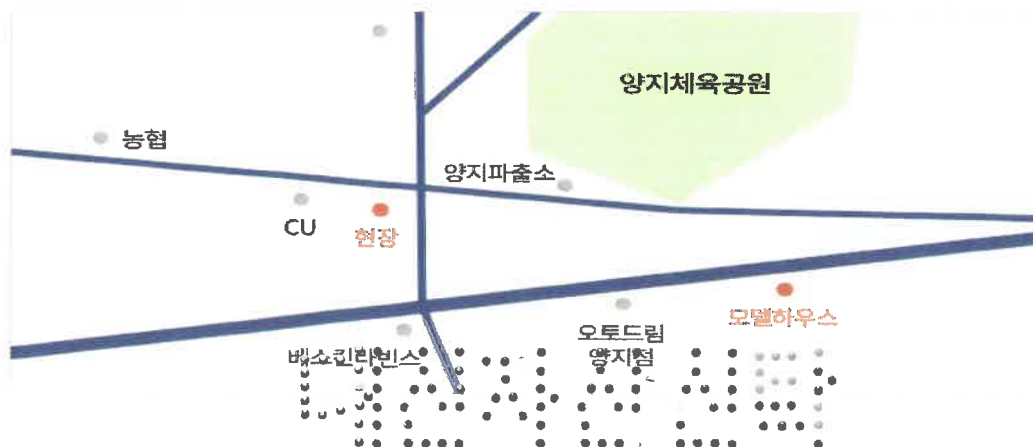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분양문의 및 모델하우스 위치

- 모델하우스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84-1
- 현장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7
- 대표전화 : 1544-1991
- 홈페이지 : <http://www.yangji-dmapt.co.kr>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배정분 목록 및 배정표

장애인 배정분 추천 기관	타입 및 배정세대수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59A / 1세대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59A / 1세대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59D / 1세대

